

제176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성은의원 외 6인 발의)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
- 2.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면
 - 가. 신교공영주차장 부지활용과 관련한 문화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현황
 - 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다. 청운실버센터 운영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97
----------	------

발의연월일 : 2007. 8. .

발 의 자 : 김성은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거주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함(안 제3조)
- 나. 종로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함(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2조,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4. 예산수반사항 : 있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 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6조 (조사 실시) 구청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